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246 |
|----------|------|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1일

발 의 자 : 이승로, 김동율 의원(2명)

찬 성 자 : 김정태, 최영수, 양준욱,  
김선갑, 이상묵, 이성희,  
김기만, 김구현, 서윤기,  
김광수(도봉), 김진수,  
오봉수 의원(12명)

## 1. 제안이유

- 경관조명 점등 및 소등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경관조명 및 미디어파사드 운영시간(점·소등 및 영상연출시간)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하도록 함(안 제24조).
- 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좋은빛위원회의 심의 대상 조명기구 정비(별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2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중 “제12조에 따른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중 “국내외 행사, 빛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은”을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제22조제2항 관련)

| 구 분               | 시 설 규 모                          |
|-------------------|----------------------------------|
| 1. 건축물            | 공공청사                             |
|                   | 연면적 2,000 $m^2$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 2.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3. 구조물            |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
| 4.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
| 5. 미디어파사드<br>장식조명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현행                                    |   | 개정안                                   |                                  |
|---------------------------------------|---|---------------------------------------|----------------------------------|
| <b>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b><br>(제13조제2항 관련) |   | <b>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b><br>(제2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시설 규모   | 구분                                    | 시설 규모                            |
| 1.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공공청사   | 1. 건축물                                | 공공청사                             |
| 2.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
| 3. 구조물                                |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탁시설    |
| 4. 도로부속 시설물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 2.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5. 주유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 3. 구조물                                |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
| 6. 미술작품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작품,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 | 4.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
| 7.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 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

#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현행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는 경관조명의 점등시간을 규제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행사나 관광진흥 목적의 한시적인 조명시설에 한해 심의를 거쳐 점등시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개정안 제24조 제3항이 영구시설의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점등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백만 원

○ 5년간 36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7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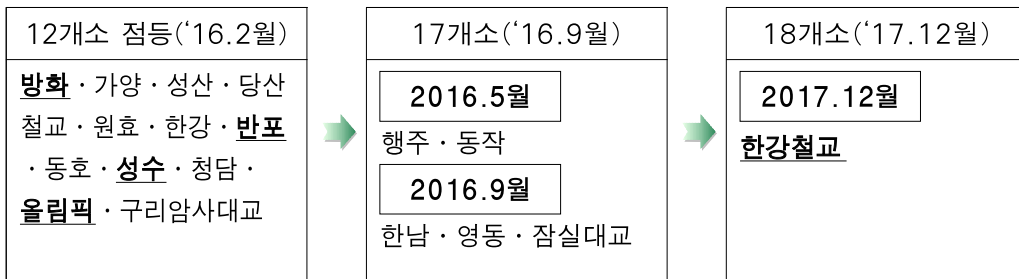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br>(2017년) | 2차년도<br>(2018년) | 3차년도<br>(2019년) | 4차년도<br>(2020년) | 5차년도<br>(2021년) | 합계     |
|-------------|----------------|-----------------|-----------------|-----------------|-----------------|-----------------|--------|
| 세입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세출          | 유지관리비(추가 전기요금) | 6,051           | 7,526           | 7,526           | 7,526           | 7,526           | 36,155 |
|             | 소계(b)          | 6,051           | 7,526           | 7,526           | 7,526           | 7,526           | 36,155 |
| □ 총 비용(b-a) |                | 6,051           | 7,526           | 7,526           | 7,526           | 7,526           | 36,155 |

나. 전제

- 이번 개정안 제24조 제3항이 영구시설의 경우도 심의를 거쳐 연장 점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관리청(서울시)의 재량사항으로 서울시의 정책변동에 따라 추계금액의 증감이 발생함(상하 제한 없음)
-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따른 경관조명의 점등시간 추가는 서울시 방침서 ‘한강교량 경관조명 점등확대 추진계획(2016.3.)’을 근거로 추정함
- 교량별 경관조명 시설용량은 위 방침서 ‘붙임 1. 한강교량 경관조명 시설현황’을 참조함
- 위 방침서에 따르면 5개 교량의 점등시간을 현재 23시까지에서 24시까지로 1시간 늘일 예정이고, ‘한강철교’는 2017.12월에 설치예정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전기요금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안함

다. 점등시간 연장의 구체적인 계획 내용(근거 : 위 방침서)



※ 한강철교는 코레일과 사업비 부담, 유지관리 주체 등 협의하여 설치추진. 밀줄 친 교량은 점등시간 연장 예정 교량

- 위 방침서에 따르면 임팩트 있는 도시브랜드를 전달할 수 있는 5개 교량을 선별하여 역사성, 상징성 등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조명에 반영 홍보할 예정임
- 위 5개 교량은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11~4월은 일몰 후 23시까지 점등하고, 5~10월은 일몰 후 24시까지 점등할 계획임

라. 점등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전기료 산출(안 제24조제3항) - 총 5개교

- 한강철교('17.12월 설치예정) : 8,078원/h  
 = 94.04kWh × 85.9원/kWh = 8,078원/h



- 경관조명 설비용량 추정 : 94.04kW
  - 현재 운영 중인 27개 한강교량의 시설용량의 합 : 2,539kW
  - 평균용량 : 2,539kW ÷ 27개 = 94.04kW
- 점등시간 1시간 연장에 따른 전기료
  - 한전(KEPCO)의 전기요금 가로등 단가('13.11.21.) 85.9원 적용
- 참고로, 경관조명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는 점등시간 연장과 무관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번 비용추계에서 제외함(경관조명을 코레일이 관리할 경우 추가비용 미발생)

○ 반포대교('16.9월 연장예정) : 4,982원/h  
     = 58.0kWh × 85.9원/kWh = 4,982원/h

- 경관조명 설비용량 : 58.0kW
- 가로등 전기요금 단가 : 85.9원

○ 성수대교('16.9월 연장예정) : 8,848원/h  
     = 103.0kWh × 85.9원/kWh = 8,848원/h

- 경관조명 설비용량 : 103.0kW
- 가로등 전기요금 단가 : 85.9원

○ 방화대교('16.9월 연장예정) : 없음

- 방화대교는 신공항하이웨이(주)가 관리 중으로 점등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전기료 부담 없음

○ 올림픽대교('16.9월 연장예정) : 19,328원/h  
     = 225.0kWh × 85.9원/kWh = 19,328원/h

- 경관조명 설비용량 : 225.0kW
- 가로등 전기요금 단가 : 85.9원

마. 연간 전기료 추가 규모 산정

○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 한강철교를 제외한 4개 교량

- 연간 전기요금 추가분 : 6,051,335원

$$= (4,982\text{원} + 8,848\text{원} + 19,328\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6/12\text{월}$$

○ 2018년 이후 : 한강철교를 포함한 5개 교량

- 연간 전기요금 추가분 : 7,525,570원

$$= (8,078\text{원} + 4,982\text{원} + 8,848\text{원} + 19,328\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6/12\text{월}$$

#### 4. 작성자

|        |         |
|--------|---------|
| 시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
| 담 당 관  | 남 승 우   |
| 사업평가팀장 | 황 훈     |
| 분 석 관  | 한 기 백   |

☎02-3705-1284, e-mail(hophan@seoul.go.kr)